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
 전 화 : 490-3315~9



제1574호 2009. 9. 25.

고 시

제2009-40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구역 및 규제대상 지정고시 2

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

- ➡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➡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➡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D-3일 접수 → D-2일 편집·교정 → D-1일 편집·교정 → D일 발간

- 🔴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🔴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 람										



고 시

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09-40호

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 및 규제대상 지정고시

「소음·진동 규제법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 및 규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09년 9월 25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1.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른 주거지역, 녹지지역 및 상업지역
- 나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
- 다.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
- 라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
- 마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

2. 이동소음원의 규제대상

- 가. 이동하며 영업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(다만, 국가비상 훈련,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및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확성기 소음의 경우를 제외한다.)

3. 이동소음원 규제내용 : 규제지역 내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